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실(시청본관 3층) 담당 김철수

문서번호 법무11010-**사**
 시행일자 1997. 4. 11. ()
 (경유) (제1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사	
기획관리실장	전철		
법무 담당관	홍		
법제계장	홍		
기안	김철수 기		
	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폐지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폐지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15(화).

첨부 훈령안 각 1부. 끝.

(제2안)

훈령제 **사** 호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훈령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폐지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15(화)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5호. 끝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
 참조 총무부장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폐지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15(화)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5호(생략). 끝.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폐지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7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조



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 폐지규정안

1.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

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(도로보수건설기계)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('95. 6.10) 및 동조례시행규칙('95.12.30)에서 그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상실된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관리실과 합의 되었음.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증기운영관리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증기운영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

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

우100-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6 - 7 / 전화 (02)3708-2320-1 / 전송 3708-2327
 처리부서 :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 조사관리과(본관3층) / 담당 : 박영환

문서번호 총무45010-158

시행일자 1997. 4. 3.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참조 법무담당관

선결	법무담당관 3		지시	
접	일자	1997. 4. 3.	결	합제제장 754
	시간			
수	번호	2109	재	
	처리과		공	
	담당자		람	

제목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 폐지 조치의뢰

1. '95. 6. 10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폐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장

